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심 사 보 고 서

2025. 2.
보건복지위원회

1. 심사경과

가. 발의일자 및 발의자: 2024년 7월 25일, 강대식의원 등 11인

나. 회부일자: 2024년 7월 26일

다. 상정 및 의결일자:

제418회 국회(정기회)

제9차 보건복지위원회(2024.11.14.)

상정, 제안설명, 검토보고, 대체토론, 소위원회부

제421회 국회(임시회)

제1차 법안심사제1소위원회(2025.1.21.)

상정, 의결(수정가결)

제1차 보건복지위원회(2025.1.23.)

상정, 소위심사보고, 의결(수정가결)

2. 제안설명의 요지

(강대식 의원)

현행법은 원칙적으로 환자 이외의 자에게 환자 기록을 열람하게 하거나 그 사본을 교부할 수 없도록 하고 있으며, 예외적으로 법률에서 명시하고 있는 경우에 한하여 이를 허용하고 있음.

한편 병역면탈 혐의자의 상당수가 「병역법」에 따른 병적 별도관리 대상자인 것으로 알려짐에 따라 병역면탈 방지를 위해서는 병적 별도관리 대상자의 보충역, 전시근로역 또는 병역면제 처분의 원인이 된 질병이나 심신장애의 치료 기록을 병역면제 등의 처분 후에도 계속 확인할 필요성이 있음.

이에 병무청장, 지방병무청장이 의료기관의 장에게 병적 별도관리 대상자의 진료기록 제출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여 병적 별도관리 대상자에 대한 사후 관리의 실효성을 높이려는 것임(안 제21조).

3. 전문위원 검토보고의 요지

(수석전문위원 이지민)

개정안은 병적 별도관리 대상자가 전시근로역에 편입되거나 병역이 면제된 이후에도 그 이력을 확인할 필요가 있는 경우 병적 관리 기간을 연장(병역처분된 날로부터 3년)하고, 병무청장 또는 지방병무청장이 보충역, 전시근로역 또는 병역면제 처분의 원인이 된 질병이나 심신장애의 확인이 필요한 경우 진료기록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는 근

거를 마련하는 내용의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강대식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제2257호)」의 의결을 전제로 개정안이 발의된 것으로, 해당 법률안의 심사경과를 살펴 개정 논의에 반영할 필요가 있음.

4. 대체토론의 요지

없음.

5. 법안심사소위원회 심사내용

(소위원장 강선우)

진료기록·치료 관련 기록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는 대상으로 “「병역법」 제77조의4제1항 및 제5항에 따른 병적 관리 대상자”가 추가된다는 점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일부 자구를 보완하여 수정의결함.

6. 찬반토론의 요지

없음.

7. 심사결과

수정가결

8. 소수의견의 요지

없음.

9. 법제사법위원회 체계·자구 심사내용

인용 대상 조문을 명확히 적시하는 등 경미한 자구정리가 있었음

10. 심사보고서 붙임서류

가.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수정안

나.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수정안

제안연월일 : 2025. 2.

제안자 : 보건복지위원장

수정이유 및 수정주요내용

개정안은 병무청장 또는 지방병무청장이 병적 관리와 관련하여 질병 또는 심신장애의 확인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 의료기관의 장에게 진료기록·치료 관련 기록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으로, 진료기록·치료 관련 기록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는 대상으로 “「병역법」 제77조의4제1항 및 제5항에 따른 병적 관리 대상자”가 추가된다는 점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일부 자구를 수정하려는 것임(안 제21조제3항제10호).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수정안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일부를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안 제21조제3항제10호 중 “제77조의4”를 “제77조의4제6항”으로 하고,
“병역판정검사대상자”를 “병역판정검사대상자 또는 같은 법 제77조의4
제1항 및 제5항에 따른 병적 관리 대상자”로 한다.

수정안조문대비표

[illegible]

<u>1조의2에 따라</u> <u>지방병무청장이</u> <u>병역판정검사와</u> 관련하여 질병 또는 심신장애의 확인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 하여 의료기관의 장에게 <u>병역판정</u> <u>검사대상자</u>의 진 료기록·치료 관 련 기록의 제출 을 요구한 경우	<u>11조의2 및 제77</u> <u>조의4에 따라 병</u> <u>무청장 또는 지</u> <u>방병무청장이 병</u> <u>역판정검사, 병적</u> <u>관리와</u>----- ----- ----- -----<u>병역판정검</u> <u>사대상자</u>----- ----- ----- -----	<u>11조의2 및 제77</u> <u>조의4제6항에 따</u> <u>라 병무청장 또</u> <u>는 지방병무청장</u> <u>이 병역판정검사,</u> <u>병적 관리와</u>---- ----- ----- -----<u>병역판</u> <u>정검사대상자 또</u> <u>는 같은 법 제77</u> <u>조의4제1항 및</u> <u>제5항에 따른 병</u> <u>적 관리 대상자</u>- ----- ----- -----
11. ~ 19. (생략)	11. ~ 19. (현행과 같음)	11. ~ 19. (개정안 과 같음)
④·⑤ (생략)	④·⑤ (현행과 같 음)	④·⑤ (개정안과 같음)

법률 제 호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의료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1조제3항제10호 중 “제11조의2에 따라 지방병무청장이 병역판정검사와”를 “제11조의2 및 제77조의4제6항에 따라 병무청장 또는 지방병무청장이 병역판정검사, 병적 관리와”로 하고, “병역판정검사대상자”를 “병역판정검사대상자 또는 같은 법 제77조의4제1항 및 제5항에 따른 병적 관리 대상자”로 한다.

부 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21조(기록 열람 등) ①·② (생략)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의료인, 의료기관의 장 및 의료기관 종 사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 나에 해당하면 그 기록을 열람 하게 하거나 그 사본을 교부하 는 등 그 내용을 확인할 수 있 게 하여야 한다. 다만, 의사· 치과의사 또는 한의사가 환자 의 진료를 위하여 불가피하다 고 인정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 9. (생략) 10. 「병역법」 제11조의2에 따 라 지방병무청장이 병역판정 검사와 관련하여 질병 또는 심신장애의 확인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의료기 관의 장에게 병역판정검사대 상자의 진료기록·치료 관련 기록의 제출을 요구한 경우	제21조(기록 열람 등) ①·② (현행과 같음) ③ ----- ----- ----- ----- ----- ----- ----- ----- ----- ----- ----- ----- ----- ----- ----- ----- 1. ~ 9. (현행과 같음) 10. -----제11조의2 및 제77조의4제6항에 따라 병무 청장 또는 지방병무청장이 병역판정검사, 병적 관리와- -----병역판정 검사대상자 또는 같은 법 제 77조의4제1항 및 제5항에 따 른 병적 관리 대상자-----

11. ~ 19. (생략) ④ · ⑤ (생략)	----- ----- 11. ~ 19. (현행과 같음) ④ · ⑤ (현행과 같음)
---	---